물질안전보건자료 (Material Safety Data Sheet)

STOP OIL TREATMENT (스톱 오일첨가제)

1. 화학제품과 회사에관한 정보

가. 제품명 : **스톱 오일첨가제** 상품코드 180007
나. 상품구분 : 마모방지및 매연감소 윤활제
다. 제품의 권고 용도와 사용상의 제한
- ㅇ 권고용도 : 내연기관 엔진용 오일첨가제
- ㅇ 사용상의 제한 : 자료없음

라. ㅇ 제조자정보 Pennsylvania Petroleum International(Malco Products, Inc.)
> 주소 361 Fairview Ave. Barberton, OH 44203 : www.malcopro.com
Technical Department (1-800-253-2526): msdainfo@malcopro.com
- ㅇ 공급회사명 : 로얄상사주식회사
> 주소 : 경기도 하남시 서하남로 115-10(감북동)
- ㅇ 정보제공서비스 또는 긴급연락전화: 02-472-1220

2. 유해, 위험성

가. 유해 위험성의 분류
- ㅇ 분류되지 않음
- ㅇ 지속적인 노출은 눈, 피부 또는 호흡기 자극을 일으킬 수 있다

나. 에방조치 문구를 포함한 경고표지 항목
- ㅇ 그림문자

- ㅇ 신호어 :경고
- ㅇ 위해 위험문구 :없음 GHS 기준하에서 유해위험물질로 분류되지 않음
- ㅇ 예방조치문구 :

예방

P261: 분진.가스,미스트,증기 또는 스프레이시 흡입을 피하시오
P264: 취급후에는 손을 깨끗이 씻으십시오
P271: 옥외 또는 환기가 잘 되는 곳에서 취급하십시오
P280: 보호장갑, 보호의, 보안경 등 안면보호구를 착용하십시오

대응

P302+P352: 피부에 묻으면 다량의 물과 비누로 씻으시오
P304+P340: 흡입하면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옮기고 호흡하기 쉽도록 안정을 취할 것
P305+P351+P338: 눈에 묻으면 콘택트렌즈를 제거하고 약15분간 흐르는 물로 닦아내십시오

저장 :특별한 예방조치 문구가 없음 (오일첨가제라고 표시하여 서늘한 곳에 보관할 것

폐기 : 폐기물 처리업체를 통하여 폐기함 / 특별한 예방조치 문구가 없음

다. 유해.위험성 분류기준에 포함되지않는 기타 유해 위험성

NFPA 등급: 보건: 1, 화재 1, 반응성: 0

3.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

유해물질, 복합유해물질이 보고된바 없음

Chemical Name	CAS Number	함유량(%)
HYDROTREATED PARAFFINIC OIL	64742-58-1	90~99
ADDITIVE MIXTURE	NONE	1~5
ETHYLENE PROPYLENE TERPOLYMER	67-63-0	1~10

4. 응급조치요령

가. 눈에 들어갔을 시

- 콘택트렌즈를 제거하고 즉시 다량의 흐르는 깨끗한 물로 15분이상 씻어낼 것
- 만약 눈이 붉어지거나 염증이 보이면 즉시 의사의 진료를 받을 것

나. 피부에 접촉 시

- 오염된 의복과 신발은 즉시 벗기고, 씻기 전에 피부에서 물질을 닦아내고비누와 물로 피부를 깨끗하게 세척하고 오염된 옷은 세탁한다. 필요시 의사의 진료를 받을 것

다. 흡입 했을 시

- 노출지역에서 즉시 신선한 곳으로 옮기십시오.
- 호흡기 장애 또는 이상증세나 이상 기미가 보이면 즉시 신선한 장소로 환자를 옮기십시오.
- 호흡시 염증이나 어지러움, 메스꺼움, 무의식의 상태인 경우에는 의사의 진료를 받으시오
- 호흡이 정지된 경우에는 기계장치로 환기를 시키고 구강 인공호흡 소생술을 실시한다

라. 먹었을 시

- 의식이 있으면 다량의 물이나 우유를 먹이고, 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아무것 도 먹여서는 안된다
- 의사의 지시없이 구토를 시키지 말고 의사의 지시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가까운 의료기관으로 데려간다

마. 급성 및 지연성의 가장 중요한 증상/영향

- 눈과 피부에 자극이 나타날 수 있으며, 먹었을때 두통, 구토,설사 등이 생길 수도 있음

바. 응급처치 및 의사의 주의사항

- 알려진 해독제는 없으며, 적절한 의학적 조치를 취할 것

5. 폭발. 화재시 대처방법

가 소화제

- 적절한 소화제
  - > 물분무, 포말, 분말소화제 이산화탄소
- 부적절한 소화제
  - > 고압 물 분사
- 대형화재 시
  - > 분무주수, 무상주수, 일반 폼약재를 사용한다
  - > 위험하지 않으면 용기를 화재 위험지역에서 옮긴다

나. 화학물질로부터 생기는 특정 유해성

- 열분해생성물
  일산화탄소, 유독 탄소화합물, 질소화합물, 황화합물, 금속 산화물, 기타 분해생성물
- 화재및 폭발위험
  경미한 화재의 위험이 있음

다. 화재진압 시 착용할 보호구 및 예방조치

- 진화시 공기 호흡장비 및 적정소방장비를 이용한다
- 물질의 누출을 먼저 중지시키고, 진화를 시도한다
- 진화가 된 후에도 상당 시간동안 물 분무로용기를 냉각시킨다
- 입출하 또는 보관장소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진화된 후에도 상당 시간동안 물로 무인호스 홀더 또는 모니터 노즐을 사용하여 물을 뿜어 용기를 냉각시킨다
- 만약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관계인 이외의 접근을 막고, 위험지역을 격리하고 출입을 금한다
- 미세한 물 분무로 다량 살수 할 것
- 방호조치된 장소 또는 안전거리가 확보된 곳에서 물을 뿌려햐 함

6. 누출사고시 대처방법

가. 인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사항 및 보호구

- 흡입 및 피부 접촉을 피함
- 오염된 의복은 갈아 입어야 하며 침투되지 않는 재질로 만든 장갑과 안전화 등 보호 장비를 착용
- 열,화염, 스파크 및 기타 점화원을 피할 것
- 발화원을 제거 할 것
- 분무를 사용하여 증기의 발생을 감소 시킬 것
- 바람을 안고 저지대로 피 할 것. 누출된 물질을 만지지 말 것

나.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사항

- 오일과 반응하지 않는 흡착제를 이용하여 누출된 오일을 흡수시켜 처리하고 지하수나 하천의 수질이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
- 법규 허용량 이상의 오염시 즉시 해당관청에 신고한다
- 소량의 누출시에는 모래 또는 다른 비가연성 물질을 사용하여 흡수 시킬것
- 관계인 이외의 접근을 막고 위험지역을 격리하며 출입을 금지시킬 것
- 물분무를 사용하여 증기의 발생을 감소 시킬 것
- 상수도 및 하수도에서 떨어진 곳에 보관할 것

다. 정화 또는 제거방법

- 누출지역을 차단제나 모래등으로 차단하고 스키머나 흡착제로 제거한다
- 폐수는 적정한 폐수처리법으로 처리 할 것
- 기준량이상의 배출은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배출내용을 통지할 것

7. 취급 및 저장방법

가. 안전 취급요령

- 다른 제품과 오염되지 않도록하며,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미끄러짐을 방지하기 위하여 새는 곳이 없도록 밀봉 할 것
- 장기간 피부와 접촉을 하지 않도록하며 입으로 빨아서 옮기기 않도록 한다
- 국소배기장치등을 가동하고 취급하며 분진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강구한다
- 보안경, 보호장갑, 보호의 등 안전보호구를 착용 할 것

나. 안전한 저장 방법(피해야 할 조건 등)

- 용이하게 취급할 수 있는 최저 온도를 유지해야 하며, 고온에 노출되는 기간을 최소화 시킬것
- 인화성 액체 및 혼합 금지물질과 분리하여 보관할 것.
- 수분 및 이물질의 오염을 피할 것

8.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

가. 화학물질의 노출 기준, 생물학적 노출기준

- 해당 없음

나. 적절한 공학적 관리

- 국소배기, 공정밀폐 환기장치를 설치하되, 폭발위험이 있는 경우, 방폭설비로 할 것
- 해당 노출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할 것

다. 개인 보호구

- 호흡기 보호

> 호흡용 보호구는 한국산업안전공단의 검정("안"마크)을 필 할 것
> 사용빈도가 높거나 노출이 심한 경우에는 호흡용 보고구가 필요함
> 호흡보호구는 최소농도로부터 최대농도로 까지 분류됨
> 사용전에 경고 특성을 고려할 것

ㅇ 눈 보호

> 비산물. 유해한 액체로부터 보호되며 보안경을 겹쳐 사용할 수 있는 보안면을 착용할 것
> 작업장 가까운 장소에 세안 설비와 비상 세척설비(샤워식)를 설치할 것

손 보호

> 침투되지 않는 재질로 만든 내화학성 보호장갑을 착용할 것

신체 보호

> 유출 위험성이 있는 경우, 침투되지 않도록 고무, 폴리에틸렌, PVC, 니트릴등의 재질로 만들어진 안전화, 보호의,앞치마를 사용하고, 필요시 불침투성 전신 보호복을 착용할 것

9. 물리. 화학적 특성

가. 외관	: 물리적 상태- 액체(점성), 색상-암버색(호박색)
나. 냄새	: 석유계 화합물의 냄새
다. 냄새 역치	: 자료 없음
라. pH	: 해당 없음
마. 녹는점/어는점	: 자료없음, 상온에서 액상
바. 초기 끓는 점과 끓는점 범위	: 자료 없음
사. 인화점(COC)	: 165℃
아. 증발속도	: 자료 없음
자. 인화성(고체, 기체)	: 해당 없음
차. 인화 또는 폭발범위의 상한/하한	: 자료 없음
카. 용해도	: 해당 없음
타. 비중	: 0.85 (15℃)
파. 자연발화 온도	: 자료 없음
하. 분해온도	: 자료 없음
거 분자량	: 혼합물로 자료없음

10. 안정성 및 반응성

가. 화학적 안정성

> 상온 상압에서 안정

나. 유해 반응의 가능성

> 중합되지 않음

다. 피해야할 조건(정전기 방전, 충격, 진동 등)

> 열, 스파크, 불꽃, 기타 점화원과 접촉을 피할 것

> 혼합금지 물질과 접촉을 피할 것

> 정전기 방전할 것

라. 피해야 할 물질

> 강산화제, 아민, 가연성물질

마. 분해시 생성되는 유해물질

> 일산화탄소(상온에서 분해되지 않음), 산화물에의한 독성가스나 증기.

11. 독성에 관한 정보

가. 가능성이 높은 노출경로에관한 정보

> 호흡기를 통한 흡입 : 중대한 부작용에 대한 정보는 없음

> 입을 통한 섭취: 설사

> 눈: 자극을 야기 할 수 있음 / 피부: 자극을 야기 할 수 있음

나. 단기 및 장기 노출에의한 지연, 급성 영향 및 만성 영향

- 급성독성물질
- 피부 부식성 또는 자극성물질

 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접촉시 자극을 일으킬 수 있음
- 심한 눈손상 또는 자극성 물질

  눈에 자극을 줄 수 있음
- 호흡기 과민성 물질

  해당 없음
- 피부 과민성 물질

  해당 없음
- 발암성 물질

  해당 없음
- 생식세포 변이원성 물질

  해당 없음
- 생식독성 물질

  해당 없음
- 표적장기.전신 독성물질(1회노출)

  해당 없음
- 표적장기.전신 독성물질(반복노출)

  해당 없음
- 흡인 유해성

  자료 없음

다. 독성의 수치적 척도(급성 독성 추정치 등)

자료 없음

12. 환경에 미치는 영향

가. 수생. 육생 생태 독성:

> 자료 없음

나. 잔류성 및 분해성:

> 자료 없음

다. 생물 농축성:

> 생분해성: 생물학적 축적 가능성이 있는 성분을 함유함

라. 토양 이동성

> 오일 성분이 수중에 부유하다가 토양으로 이동 할 수 있음

마. 기타 유해영향

> 자료 없음

13. 폐기시 주의사항

가. 폐기 방법:

- 폐유는 밀폐용기에 보관하고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위탁처리 할 것
- 위탁처리자는 관련법규에따른 폐기물 처리업의 허가, 재활용허가를 받은자여야하며 규정에의한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, 운영하는 자 또는 해양오염방지법에 의하여 폐기물 해양 배출업의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함

나. 폐기시 주의사항

- 무단 처분이나 소각은 자연 생태계에 유해 하므로 이를 금함
- 해당 물질을 보관하고 있던 용기도 법규에의한 폐기방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함

14. 운송에 필요한 정보

가. 유엔번호	: 해당없음
나. 유엔 적정 선적명	: 해당없음
다. 운송에서의 위험성 등급	: 해당없음
라. 용기등급	: 해당없음
마. 해양오염물질	: 해당없음

바. 사용자가 운송 또는 운송 수단에 관련해 알 필요가 있거나 필요한 특별한 안전대책

○ 화재시 비상조치의 종류	: 해당 없음
○ 유출시 비상조치의 종류	: 해당 없음

15. 법적 규제현황

가.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규제

○ 작업환경측정물질	: 해당 없음
○ 관리대상유해물질	: 해당 없음
○ 노출기준설정물질	: 해당 없음

나.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의한 규제 : 해당 없음

다.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규제
- 위험물 제4류, 제4석유류

라. 폐기물관리법에의한 규제
- 폐기물관리법 제2조, 제4호에따라 지정폐기물로 분류됨

마. 기타 국내 및 외국법에의한 규제
- EU 분류정보 : 규제대상 아님
- 미국관리정보
  - > OSHA규정(29CFR1910.119) : 규제대상 아님
  - > CERCLA 103규정(40CFR302.4) : 규제대상 아님
  - > EPCRA 302규정(40CFR355.30) : 규제대상 아님
  - > EPCRA 304규정(40CFR355.40) : 규제대상 아님
  - > EPCRA 313규정(40CFR372.65) : 규제대상 아님
  - > PIC물질 : 해당 없음
  - > POPs 물질 : 해당 없음
- 로테르담 협약 물질 : 규제대상 아님
- 스톡홀름 협약 물질 : 규제대상 아님
- 몬트리올 의정서 물질 : 규제대상 아님

16. 기타 참고사항

가. 자료의 출처
- 미국엑슨모빌연구소
- Grobally Harmonized System of Classificatio and labelling of Chemicals(GHS)
- 산업안전보건법
- 한국산업안전공단

나. 최초 작성일자: 2013년06월15일(한글판)

다. 최종 개정일자: **2019년01월03일(한글판)**

라. 기타

상기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기술된 내용은 미국 PPI사의 물질안전보건자료(MSDS)를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써, 작성일 현재까지 정확하게 파악되었다고 사료되는 자료를 기준으로 건강과 안전 및 환경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으로, 차후 제품의 성상이 변경되거나 삭제 될수 있는 사항도 있으므로 동 자료가 100% 보증하는 것은 아님을 참조하십시오.
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급원(Section 1)으로 연락하십시오